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9.16(화) 10:00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 분야의 전문화와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분리하고, 자구의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현행: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 및 과학기술
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

- 개정: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

나. 과학기술 진흥 관련 조문 분리·수정

(안 제1조 ~ 제14조)

- 과학기술 진흥 관련 조항 및 문구 삭제

다. 위원 해촉 규정 신설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과학기술 진흥 분야의 전문화와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분리하는 내용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안 제12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이유와 비용추계표에 따라 4차년도와 5차년도 재원조달 방안, 그리고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